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009)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4. 10. 29.
3.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1)).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u>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u> 을 말한다. <u><신설></u> <u><신설></u> 2. ~ 4. (생략)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u>탈북 청소년</u>	제2조(정의) ----- -----. 1.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u> <u>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u>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 <u>북한이탈</u>

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주민인 청소년----- -----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 등에게 보호를 신청해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이 법 제6조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비정치적 범죄자,

1) 안 제24조의2는 안 제2조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될 경우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임.

2)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배제³⁾할 수 있음.

□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법 제11조), 사회적응교육(법 제15조),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 주거지원(법 제20조), 정착지원금 지급(법 제21조)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은 법 제24조⁴⁾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3)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출생지에 따라 ① 북한출생, ② 제3국 출생, ③ 남한출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북한출생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② 제3국 출생 자녀 중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③ 남한출생 자녀 중 북한에 직계가족 등이 없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함.

□ 다만, 법 제24조의2⁵⁾는 정착지원시설 내의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에 “탈북 청소년”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탈북 청소년”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였고,

법 제24조의3⁶⁾은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5)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6)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3국 출생자녀 대상 지원제도 현황 〉

구 분	제 도 및 기 관		내 용
탈북청소년 지원	대학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대학 정원 내 입학		○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정원 내 입학 (‘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민간 기부금 활용 대학 4년 중 1회 장학금 지원		○ 남북하나재단 민간 기부금을 활용, 신규 입학자 대학 4년 중 1회 장학금 지원(‘17년도부터 지급)
	한국어교육 강사 배치 확대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지 역아동센터(방과 후 공부방), 하나원(예비학교)에 이중 언어 구 사 강사를 배치하여 지원 ○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동일 지원	하나원		○ 영아반 및 하나돌학교 입소, 학력인정 지원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 초등 공부방 사업 ○ 청소년 학습지도(학습 멘토링) ○ 대학진학 및 적응지원프로그램
	특성화·대안학교 (5개소)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학력인정) 무료 입학(기숙사 제공) - 한겨레중고등학교(경기 안성), 여명학교(서울 강서), 하늘꿈중 고등학교(경기 성남), 드림학교(충남 천안), 장대현중고등 학교(부산 강서) * 수시 입학 가능
	북 한 이 탈 주 민 지 원 재 단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적응 지원, 1:1 맞춤형 멘토링 * 22개교, 20명의 통일전담교육사 근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6개소)	○ 정규학교 입학이 어려운 탈북청소년들이 재학중인 미인가 대 안교육기관(학력미인정, 검정고시) 운영지원 - 정규교과 수업 특성화 수업 정서안정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7개소)	○ 정규학교 부적응 청소년 대상 탈북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지도 - 학습지도, 글짓기교실, 특기적성 등
		방문 학습지 지원	○ 만3세~초등학교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2과목)
		화상 영어교육	○ 청소년(9세~24세 이하), 인터넷 화상 영어강좌 수강 지원
		통일미래인재육성	○ 탈북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운영(영어·컴퓨터 멘 토링, 봉사프로그램 등), 대학입시자료집 발간, 진로진학지도· 상담, 진로적성 검사 결과분석 등

자료: 통일부

□ 또한, 우리위원회가 2024년 8월 29일 의결하고,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시행 2025. 4. 23.)⁷⁾는 제24조(교육지원)에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여 교육지원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켜 이 법에 따른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3국 출생 자녀는 초기교육의 부족, 언어 및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근 개정된 제24조(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정착금, 의료 혜택 등 기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인 부모 역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시행 2025. 4. 23.)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중 2024년도에는 약 43.6%가 중국 등 제3국 출생인데,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인 자격으로 일반적인 중국인들과 동일하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입국함에 따라 북한출생에 비해 입국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이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이 증가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임.

< 탈북학생 통계 >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475	2,517	2,538	2,538	2,531	2,437	2,287	2,061	1,769	2,645
북한출생	1,225 (49.5%)	1,201 (47.7%)	1,101 (43.4%)	1,008 (39.7%)	982 (38.8%)	907 (37.2%)	789 (34.5%)	635 (30.8%)	511 (28.9%)	381 (14.4%)
제3국출생	1,250 (50.5%)	1,316 (52.3%)	1,437 (56.6%)	1,530 (60.3%)	1,549 (61.2%)	1,530 (62.8%)	1,498 (65.5%)	1,426 (69.2%)	1,268 (71.7%)	1,153 (43.6%)
국내출생	-	-	-	-	-	-	-	-	-	1,111 (42.0%)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4년 4월 기준, 국내출생 자녀 비율은 2024년 최초 조사)

□ 개정안은 제3국 출생 자녀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중국 국적 등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현재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제3국 출생 자녀의 상당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봄.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킬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에 포섭되게 되고,

제3국 출생 자녀의 자녀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됨에 따라 그 지원의 범위가 추가적으로 확장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생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 현황 〉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1,500만원,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월 20만원, 18세~24세)
주거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200만원/6월(6백만원限)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사회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탈북민 특례 적용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 2종 자격 의료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제3국 출생자녀 정원내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자료: 통일부

- 통일부는 제3국 출생자녀를 북한이탈주민 정의에 포함시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에 포섭되게 되므로, △특례입학, △군 면제 등 사회적으로 예외를 주는 특례 대상이 증가할 뿐 아니라,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에 따른 초기 정착금 등 예산 소요가 크게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제시함.
-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 제2조제2호는 3국 출생 자녀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현재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3국 출생 자녀 대부분을 포섭하지 못하는 결과 예상되고, 또한, 국내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법률상 형평성,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7